

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5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정의를 농어촌 주택의 신축·증축·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정의를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.
- 나. 「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」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 및 상환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어촌 주택의 신축·증축·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,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함(안 제2조)

나.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그 자금의 운용”을 “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촌주택사업”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하고,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·증축·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촌주택개량자금”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군수·구청장 또는 농협은행(회원조합을 포함한다)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질될”을 “변경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”을 “제1

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협은행(회원조합을 포함한다)”으로, “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”을 “농어촌주택개량자금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자금의 신청) 군수·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주택개량사업”을 “농어촌주택사업”으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금을”을 “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의한 감독상의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아니한 때”를 “아니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“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융자 및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농어촌주택사업의 목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주택개

량자금으로 본다. 다만, 융자된 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농어촌주택개량 자금의 운영 및 관리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는 “ <u>농어촌주택사업</u> ”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<u>개수 · 개축 · 이축 · 신축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 <u>농어촌주택사업</u> ”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하고, <u>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 · 증축 · 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</u> 2. “ <u>농어촌주택개량자금</u> ”이란 <u>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.</u>
제3조(자금운영) ① <u>자금은 이를 군 · 구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.</u>	제3조(자금운영) ① <u>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군수 · 구청장 또는 농협은행(회원조합을 포함한다)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</u>
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</u>	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

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금의 신청) 군수·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(별지 서식)을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한다.

제5조(융자 및 보조)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변경될 -----

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협은행(회원조합을 포함한다) -----
-----농어촌주택개량자금 -----
-----.

제4조(자금의 신청) 군수·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융자 및 보조) ① ----- 농어촌주택사업-----

범위-----
-----.

② ----- 농어촌주택개량자금 -----

----- 지체 없이 -----

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.

1.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
2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「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----.

1.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
2. ----- 따른 -----
----- 아니한 경우

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“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